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000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률 조문을 인용하는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며,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게 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와 관련된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조항(제25조의4) 신설에 따른 법 조문 이동(제25조의6→제25조의7)으로 시행령 제5조의5제1항 및 같은조 제2항의 법 조문 인용을 정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유형의 시설 등”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으로 정함에 따라서 해당 시행령 제24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 삭제

다.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는 법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4 제2호나목,마목 개정

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 4 제2호바목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 중 “**법 제25조의6제1항**”을 “**법 제25조의7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의6제2항**”을 “**법 제25조의7제2항**”으로 한다.

제24조(아동·청소년기관 등의 범위)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나목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
7조
제4항
제1호

별표 4 제2호나목 위반행위란 마목 중 “**법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 또는 같은조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67조제4항제2호	300	300	300
--	--------------	-----	-----	-----

부 칙

이 영은 2025.10.23.날 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5(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①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 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수사 대상, 수사방법, 사건요지 및 필요성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및 승인건수로 한다.	제5조의5(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 ----- ----- -----. ②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 ----- ----- -----
제24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 법 제56조제1항제17호 및 제57조제3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등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을 하는 시설등	<삭제>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4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 67조 제4항	300	300	300
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 67조 제2항 제2호	600	800	1,000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4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 67조 제4항 제1호	300	300	300
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 58조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 67조 제2항 제2호	600	800	1,000
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67조 제4항 제2호	300	300	300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연 락 처	(02) 2100 - 6416